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나25785(본소), 2022나25792(반소) 판결 [수익금
등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성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5. 10.

판 결 선 고 2023. 5. 31.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가단129347(본소), 2020

가단16670(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8,929,8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 20.자 본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5,414,500원 및 그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7. 2.부터, 19,414,5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3,1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안, 판사 김동현, 판사 박희근